

인천광역시 출산·양육지원 정책 안내

1 셋째이상 자녀 출산장려금 지원

2011년부터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 출산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하며, 2012년에는 둘째아 200만원, 2013년에는 첫째아 100만원을 지원·확대합니다.

2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확대

모든 임신부에게 산전 진찰 등에 드는 진료비용 지원을 '11년 4월 신청자부터 1인당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합니다.
(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형태의 고운맘 카드 발급)

3 임신부 철분제 지원

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에게 임신 5개월부터 분만시까지 철분제를 지원합니다.

4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

12세이하 아동은 BCG(결핵), B형간염, 폴리오(IPV) 등 8종의 백신을 보건소와 병원에서 무료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.

5 다자녀가정 세제 지원 확대

18세미만 3자녀이상 가정의 자동차 취·등록세를 100% 경감해 드립니다.
※ 2,000cc이하 승용차, 7인승~10인승 승용차, 15인승이하 승합차, 1톤이하 화물차, 이륜자동차



“어린이집을 선택하시기가 어려우신가요?”

다양한 정보의 수집과 전화 및 방문상담 등을 통해 꼼꼼히 살펴보신 후 어린이집을 선택해보세요.

- 어린이집 검색 서비스를 활용하세요.

- 인천광역시보육정보센터

<http://incheon.childcare.go.kr>

- 아이사랑보육포털

<http://www.childcare.go.kr>

- 보건복지부와 인천광역시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좋은 어린이집에 국가가 인증하는 평가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.
- 우리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좋은 어린이집인지 평가인증을 확인하시고 선택하세요.

“육아지원에 대해 궁금하신가요?”

가까운 보육정보센터나 구청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.

보육정보센터	
인천광역시보육정보센터	431-4606~9
남구 보육정보센터	884-0756
부평구 보육정보센터	361-8653~4

인천광역시 및 군, 구청	
인천광역시 여성정책과	440-2895
중구 가정교육과	760-6938
동구 가정복지과	770-6838
남구 가정복지과	880-4283
연수구 사회복지과	810-7751
남동구 아동청소년과	453-5884
부평구 여성가족과	509-6519
계양구 여성아동과	450-6747
서구 복지서비스과	560-5725
강화군 주민생활지원실	930-3589
옹진군 주민생활지원실	899-2342

“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광역시가 함께 합니다.”



보육료 지원이
더! 커졌다.

01 2011년 3월부터 보육료지원 이렇게 확대됩니다.

- 만0세~4세아 전액지원 대상을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%에서 70% 이하까지 확대합니다.
- 맞벌이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지원이 확대됩니다.
 - 부부합산소득의 25%를 감액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.
- 다문화가정은 소득·재산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해 드립니다.
- 셋째아 이후 보육료가 75%에서 100%로 확대됩니다.

02 보육료 어디서, 어떻게 신청하나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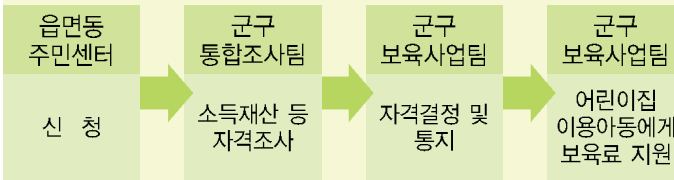
-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고,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

< 보육료 신청시 필요서류(읍·면·동주민센터 비치) >

-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- ② 소득재산 신고서
- ③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제공(변경) 신청서
- ④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(활용) 동의서
- ⑤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(신청인 뿐 아니라 모든 가구원 서명 필요)

- 보육료 지원신청은 필요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제출시 신청으로 인정되며, 신청시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이면 보육료가 지원됩니다.
- 소득과 재산은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반영합니다.
- 금융재산과 금융기관대출금(부채)은 금융재산 조회 결과를 반영합니다.
- 2011년 보육료 신규신청은 2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.

03 보육료 지원대상 이렇게 결정합니다.



- 자격이 책정되는 아동은 신청일부터 보육료가 지원됩니다.
- 자격이 있는 아동은 매년 재신청 할 필요가 없습니다. (보건복지부에서 매년 2회 소득재산 정기변동을 통해 아동의 자격을 재책정 또는 탈락 결정)

04 보육료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?

<연령별 보육료 지원액, 2011년 3월부터>

지원대상	연령	지원단가
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%이하	만0세	394,000
	만1세	347,000
	만2세	286,000
	만3세	197,000
	만4세	177,000
	만5세	177,000

- 만0세아 : '10.1.1 이후 출생, 만1세아 : '09.1.1~12.31, 만2세아 : '08.1.1~12.31, 만3세아 : '07.1.1~12.31, 만4세아 : '06.1.1~12.31, 만5세아 : '05.1.1~12.31
- 셋째아 이후 아동과 입양아동은 소득·재산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합니다.
- 취학아동('04.1.1생~'98.12.31생)은 차상위 이하(4인기준 173만원) 가구에 대해서 방과후 보육료(월88천원)를 지원합니다.
- 장애아동은 소득·재산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(394천원)지원합니다.
- 다문화가정 아동은 소득·재산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합니다.

05 보육료 지원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
- 만0세~5세 아동에게 가구의 소득·재산 정도에 따라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%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합니다.

<가구원수별 기준 소득인정액 (소득하위 70%이하)>

가구원수	3인까지	4인	5인	6인
소득인정액	415만원	480만원	537만원	588만원

- 7인이상가구 :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
- 소득인정액 : 가구의 "소득"과 "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"을 합산한 금액
- 맞벌이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출시 부부 합산 소득의 75%만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.
- 보육료 지원대상 간편 확인
(인천여성홈페이지 → 보육 → 보육료지원 대상 확인)

<http://womem.incheon.go.kr>

[참고] 보육료 지원 월 소득인정액 산정방법

조사대상	아동의 부모 및 형제자매 (조부모 미포함)
소득인정액	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소득평가액	실제소득
소득	근로소득 :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균한 소득(금액) 맞벌이부부는 부부 합산 근로소득의 75%만 반영 사업소득 :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중 사업소득 / 12월
재산의 소득환산	(재산의 종류별 가액 - 기본재산액 - 부채) ×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
자동차 (2,500cc 이상)	2,500cc이상 : 자동차가액 100%×1/3 2,500cc미만 승용차, 차령 6년이상차량, 11인승이상 승합차, 3자녀 이상가구의 차량은 배기량과 무관하게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
일반재산	일반재산×4.17%×1/3 토지, 주택, 건축물은 적용률·임차보증금은 주거목적인 경우 보정계수적용·2,500cc미만승용차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
금융재산	금융재산 가액×6.26%×1/3
기본 재산액공제	대도시 5,400만원, 중소도시 3,400만원, 농어촌 2,900만원